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   |         |
|---|---------|
| 선 | 기 관 의 장 |
| 람 |         |



제 525 호

2003 년 7 월 8 일 화 요 일

## 차 례

### 훈 령

- 인천광역시남동구훈령 제188호(인천광역시남동구열린쉼터관리운영규정)----- 3

### 공 고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3-339호(공사전자입찰공고<소래포구(항)정비공사(2단계)>)- 6
-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관리공단공고 제2003-3호(신조공인공고)----- 9

|   |  |  |  |  |  |  |  |  |
|---|--|--|--|--|--|--|--|--|
| 회 |  |  |  |  |  |  |  |  |
| 람 |  |  |  |  |  |  |  |  |

발행 : 인천광역시 남동구 편집 : 문화홍보실



**훈 령**

인천광역시남동구열린쉼터관리운영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윤 태 진

2003. 7. 8.

인천광역시남동구훈령 제188호

인천광역시남동구열린쉼터관리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인천광역시남동구열린쉼터(이하 "열린쉼터"라 한다)의 관리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타법규와의 관계)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당사자로 하는계약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인천광역시남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열린쉼터"라 함은 인천광역시청 앞 미래광장에 공익(행정)목적과 상업 목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건축물(이에 부속되는 일단의 토지 및 구축물을 포함한다)을 말하며, 공공시설과 점포로 구분한다.
2. "공공시설"이라 함은 공중화장실, 조경시설 등 열린쉼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시설을 말한다.
3. "점포"라 함은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천광역시남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임대하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말한다.
4. "임대"라 함은 점포를 사용·수익 또는 대부하는 것을 말한다.

5. “관리위탁”이라 함은 제3자에게 공공시설 관리 및 점포 임대를 말한다.
6. “관리운영비”라 함은 공중화장실 운영비, 전기료, 상·하수도요금 등 공공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제4조(운영관리) ①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열린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구 소속 공무원에게 관리사무를 위임하거나, 제3자에게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열린쉼터를 위탁관리 할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구가 설립한 도시관리공단

2. 식품위생법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영업을 3년 이상 한 자 또는 법인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해 관리수탁자는 열린쉼터 관리운영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공공시설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관리위탁료 산정 시 감안한다.

제5조(위탁공고)관리수탁자 모집은 구보 또는 구홈페이지 및 구청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공개입찰에 의해 선정한다.

제6조(관리위탁기간) 관리위탁기간은 2년을 기준으로 하며, 필요시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제7조(관리수탁자의 의무)①관리수탁자는 열린쉼터 관리운영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관리수탁자는 열린쉼터에 대하여 쾌적하고 청결하게 유지·관리 및 청소 등을 실시하여 이용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감독)구청장은 열린쉼터를 위탁관리 할 경우에는 관리수탁자에 대해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계약해지)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리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수탁자로 선정되거나 임대차한 경우
2. 관리위탁기간이 개시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관리수탁자가 입주하지 아니한 경우
3. 관리수탁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하였을 경우
4. 기타 관리위탁계약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10조(기타규정) 이 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운영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이전에 위탁관리 중인 경우에는 제4조 규정에 의한 운영관리로 본다

### ○ 제정이유

- 화장실 문화개선운동의 일환으로 공중화장실 및 근린생활시설 복합 건축물로 신축한 시청앞 연립주택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근거규정 마련

### ○ 주요골자

- 신축건축물을 공중화장실 등 공공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인 점포로 구분(제3조)
- 열린주택 관리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관리위탁료 산정시 공공시설 운영비를 감안토록 함으로써 적정 관리위탁료 산정토록 함(제4조)
- 관리위탁기간을 2년 단위로 규정하되 필요시 1년단위로 연장토록 함(제6안)

|   |   |
|---|---|
| 공 | 고 |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3-339호

공사전자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소래포구(항)정비공사(2단계 )

나. 공사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111번지 소래포구(항) 일원

다.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간(6개월)

라. 공사개요 :

- 댕구산 주변 정비 및 친수공간 조성
  - 흙쌓기 :  $V=11,884m^3$
  - 칼라무늬 콘크리트 포장 :  $V=3,033m^3$
  - 조경시설물(조경식재포함) : 1식
- 기존관정철거 : 1식(폐공되메우기, 급수관 철거등)
- 공판장 앞 하상정리 및 쇄굴보강 : 1식

마. 설계금액 : ₩743,610,000원(추정가격676,009,091원, 부가세67,600,909원)

바. 현장설명 : 생략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지역제한 및 적격심사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로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 관내에 주된 사업소(영업소)를 두고 G2B(국가종합전자조달)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업체로서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업의 토목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공사업 면허소지업체

4.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

으로 합니다.

-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동 국고 귀속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확약서로 갈음하고,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5/100이상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5. 입찰서 제출

- 가. 입찰서 제출기한 : 2003. 7. 8(화) 09:00~2003. 7.18(금) 15:00  
 나. 설계도서 열람일시 및 장소 : 2003. 7. 8(화) ~2003. 7. 18(금) [도시정비과]  
 다. 입찰서는 반드시 정부전자조달(G2B)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정부전자조달(G2B)전자입찰시스템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 6.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가. 입찰집행(개찰)일시 : 2003. 7. 18(금) 16:00  
 나. 개찰장소 : 인천광역시남동구 자치행정과 입찰집행관 PC

## 7.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 [행정자치부 예규 제98호(2002. 10. 2)] 및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행정자치부 예규 제99호(2002. 10. 2)] 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자로서 최저가(제한적)입찰 자 순으로 적격심사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입찰집행후 낙찰하한가격/예정가격이 87.745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 업체로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제출의 통보를 받은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적격심사후 지체없이 결정 통보합니다.  
 다. 적격심사 세부평가는 행정자치부 예규 제99호의 「추정가격 10억원미만 3억원이상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에 의하며, 수행능력 평가중 시공경험평가는 당해공사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간(2000,2001,2002년) 토목공사업 실적누계액(발주기관의 관급·지급자재비는 제외)의 비율로 평가합니다.

## 8. 예정가격의 결정

- 가. 기초금액(743,610,000원)의  $\pm 3\%$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며
- 나. 이중 투찰자에 의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9. 입찰의 무효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법시행규칙 제44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및 조달청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 10. 기타사항

-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98호, 제99호), 입찰공고조건,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우리구에서 제시한 특수조건, 조달청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나. 낙찰자는 적격심사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하여야 하며, 만약 위 기간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할시 차순위자와 계약함과 동시에 행정제제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구 자치행정과(032-453-2210)에 문의 하시기 바라며 본 공고문은 인천광역시남동구 인터넷홈페이지(<http://namdong.incheon.kr>)의 입찰공고란에 게재하며,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관리공단공고 제2003-3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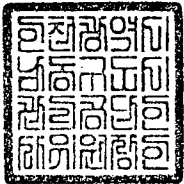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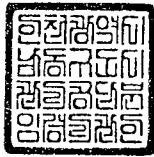
### 신조공인공고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관리공단직인관리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신조 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 7.

##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1. 신조사유 : 남동구도시관리공단 창립
2. 신조공인 최초사용년월일 : 2003. 7. 14
3. 신조공인명

| 신 조<br>공인명 |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br>관리공단인사위원장인                                                            | 신 조<br>공인명 |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br>관리공단분임관리관인                                                            | 신 조<br>공인명 |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br>관리공단분임징수관인                                                              |
|------------|-------------------------------------------------------------------------------------|------------|-------------------------------------------------------------------------------------|------------|---------------------------------------------------------------------------------------|
| 공인명<br>인 영 |  | 공인명<br>인 영 |  | 공인명<br>인 영 |  |

